

전주지방법원 2020. 9. 9 선고 2020나21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9. 9 선고 2020나2116 판결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2. 19 선고 2018가단870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

담당변호사 최정필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2020. 7. 1.

판결 선고2020. 9. 9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2. 19. 선고 2018가단87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. 10. 10. 접수 제180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나상훈

판사오창민

판사조지환

별지